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551
----------	------

제출일자 : 2024. 8. 23.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중인 현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6조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비고
달성군다사장애인 재활작업장	다사읍 세천로10길 24-4	485.7㎡	4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사업명	직업재활사업	보호작업과정	근로사업	기타관련사업
세 부 사 업	· 직업상담 · 직업평가 & 과정평가 · 사례회의 · 재활계획수립 · 업체개발 · 업체관리 ·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 직업준비 및 수행적응훈련 · 직무능력향상 · 직업유지적응훈련 · 여가지원활동 및 체력관리 · 현장훈련	· 작업 활동 (임가공) - 건설자재 - 자동차부품 - 농업자재 - 생활용품 · 생산 활동	· 야외학습 · 야외적응훈련 · 부모교육 · 부모간담회 · 자원봉사관리 · 건강증진프로그램 · 성폭력 예방교육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시설장	직업훈련교사	사무·회계
인 원	4	1	2	1

라. 위탁기간: 5년(2024.12.01. ~ 2029.11.30.)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4.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

○ 2024. 8. 6. :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 접수

※ 신청기관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2024. 8. 13.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재계약 적정 판단)

※ 심의 결과(평균 70점 이상 시 적격, 최고·최저 제외 평균)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총점 370점, 평균 92.5점 재계약 의결

○ 향후일정

- 2024. 9. : 의회 동의

- 2024. 11. : 협약체결(위탁기간 : 2024. 12. 1. ~ 2029.11.30.)

- 2024. 11 : 공보 게재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참고 불임)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로 221(개정 2023. 3. 30.)

2.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0길 24-4

제3조(시설의 종류 및 업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하며, 그 업종은 장애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재활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한다.(개정 2022. 12. 30.)

-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재활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사무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7.9.29.]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전문개정 2023. 4. 28.)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4. 28.)

제4조의3(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4. 1.)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4. 28.)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23. 4. 28.)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4. 1.)

1. 수탁기관의 선정(신설 2024. 4. 1.)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신설 2024. 4. 1.)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 4.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개정 2024. 4.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4. 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4. 28.)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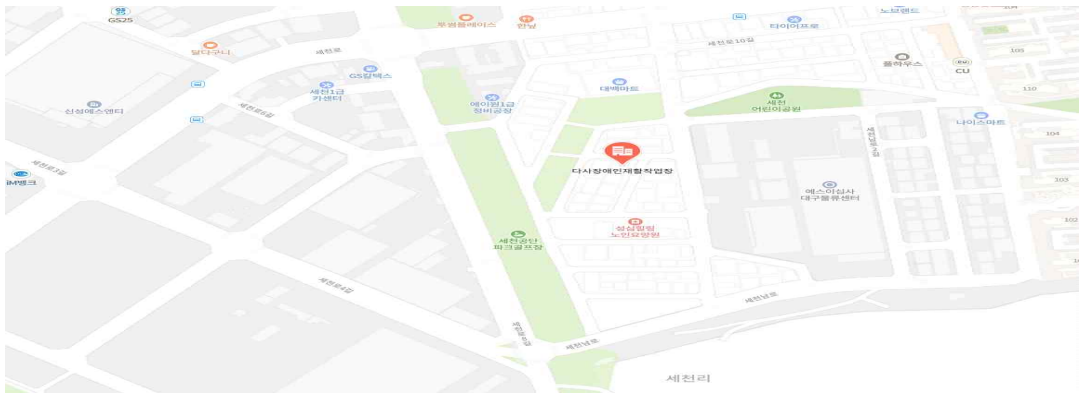
1 기본 검토사항

대 상 사 무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민 간 위 탁 추 진 목 적	○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 중인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24.11.30.로 만료예정임 ○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위 탁 근 거	○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위 탁 내 용	○ 추진경위 -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의 위탁기관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추진현황 - 최초위탁 : 2014.12.19.~2016.11.30.(2년),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회 심의 - 2차 재위탁 : 2016.12.01.~2019.11.30.(3년)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계약(갱신) - 3차 재위탁 : 2019.12.01.~2024.11.30.(5년)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계약(갱신) ○ 위탁기간 : 5년(2024. 12. 1. ~ 2029. 11. 30.) ○ 위탁내용 -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전년도 대비 위탁내용이 추가·삭제·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 및 그 사유 : 해당 없음

적 정 성 점 토	※ 별첨1~2(아래 6개 항목)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경제적 효율성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기 존 수탁 기 관 및 선 정 방 법	○ 수탁기관명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수탁기간 : 2019.12.1.~2024.11.30.(5년간) ○ 위 탁 금 : 311,480천원(2022) 320,000천원(2023) 320,000천원(2024)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재계약(갱신)
수 탁 기 관 선 정 방 법	○ 수탁기관명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수탁기간 : 2024.12.1.~2029.11.30.(5년간) ○ 위탁기관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갱신) ○ 재계약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달성복지재단은 달성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10월에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현재 달성군관내 복지관련 시설 13개소(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포함), 국공립 어린이집 41개를 달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에 있음

민 간 위 탁 금 *예산지원형 위탁시 기재	○ 이미 위탁하고 있는 경우 : 최근 2년간 위탁금 및 금년(금회) 위탁금 예상액과 산출내역을 아래표에 기재, 전년도대비 금년 위탁금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내역 및 사유 기재 <table><tr><td>연도별</td><td>민간위탁금(천원)</td><td>세부 산출내역</td></tr><tr><td>2022년</td><td>311,480</td><td>인건비 234,126 / 관리운영비 77,354</td></tr><tr><td>2023년</td><td>320,000</td><td>인건비 238,023 / 관리운영비 81,977</td></tr><tr><td>2024년</td><td>320,000</td><td>인건비 251,715 / 관리운영비 68,285</td></tr></table>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2년	311,480	인건비 234,126 / 관리운영비 77,354	2023년	320,000	인건비 238,023 / 관리운영비 81,977	2024년	320,000	인건비 251,715 / 관리운영비 68,285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2년	311,480	인건비 234,126 / 관리운영비 77,354											
2023년	320,000	인건비 238,023 / 관리운영비 81,977											
2024년	320,000	인건비 251,715 / 관리운영비 68,285											
사 용 료 *수익창출형 위탁시 기재	○ 이미 사용 허가하고 있는 경우 : 최근 2년간 사용료 수입 및 금년(금회) 사용료 수입 예상액을 아래 표에 기재 <table><tr><td>연도별</td><td>사 용 료(천원)</td></tr><tr><td>20--년</td><td>해당 없음</td></tr></table>	연도별	사 용 료(천원)	20--년	해당 없음								
연도별	사 용 료(천원)												
20--년	해당 없음												
기대효과 및 향 후 계 획	○ 사업의 연속성, 효율성, 장애인복지분야의 전문지식 등을 통한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활성화 기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본사업의 확대 및 강화 - 임가공 작업에서 생산품 작업으로 전환 추진 ○ 향후 계획 - 2024. 9. :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보고) - 2024. 11. : 위·수탁 협약서(재계약) 체결 - 2024. 11 : 공보 게재												
전 문 가 의 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평균 92.5점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함이 적격함을 의결함												

② 시설위탁 시 작성

시설개요	시설명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0길 24-4		
	시설규모	연면적 485.7㎡ 건축면적 244㎡(1층 241.7㎡, 2층 244㎡)		
	시설용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준공일자	2016.11	개원일자	2014.12.19. 2016.11.20.(확장이전)
	이용대상	장애인	수용인원	25명
	보유장비	사무용가구, pc 4대, 차량 2대(포터) 등		
위치도				
지역여건	○ 장애인직업재활 작업물량 확보 - 세천공단, 성서공단 등과 인접하여 임가공 물량 조달에 용이			
현장사진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전경>			

별첨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사항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1. 다른 사무방식 으로 수행가능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사무 대상임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지관리 성격의 행정재산으로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 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경우 관리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로 장애인복지는 물론 직업재활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구분	직 영	위탁대행	민간위탁
	장점	- 투명한 총괄관리 가능 - 종사자 고용 안정 보장	- 대행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안정적 운영 가능 - 종사자 고용 안정 보장	- 운영비용 최소화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가능 - 인력의 정규 근무시간 외 운영에 대한 융통성
단점	-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공무원·공무직)로 운영비 지속 상승 우려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전문성 결여	- 시설 관리에 필요 인력 증원 및 인건비 추가 지원 필요 - 근로자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 결여	- 주기적 위탁갱신 필요 - 관리운영에 대한 지속 관리·감독 필요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연 1회 이상의 업무점검 등을 통해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민간 위탁할 경우, 관련 사업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책임있는 운영이 가능함 ▶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물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는 사무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정화 도모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 운영 대비 운영비용 최소화 및 관리의 전문성 강화 가능 ▶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 인원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교대근무) 등을 통해 운영 비용 최소화 가능 ▶ 전문기관의 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 직접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 및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 또한 수탁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자부담뿐만 아니라 후원금 모집, 공모사업 등에 참여가 가능하여 이로 인해 추가되는 사업비가 다량 확보될 수 있음.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현장 경험과 시설 관리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단체에 수탁할 경우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가능 ▶ 장애인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며,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운영실적이 관리되고 있으며, 연2회 운영실적을 보고하여 이를 통해 계량적 성과측정이 용이함.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연간사업 및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연 1회이상 지도 점검, 수시점검 등)과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등을 통해 회계관리 및 재정 운영 상태에 대한 투명성 유지 가능

별첨2 검토결과

-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직업재활에 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반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 및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달성군다사장애인지원작업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의 행정재산임을 고려하여, 민간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을 적극 활용할 경우 행정비용의 절감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수의협약(또는 재계약) 사유서

현황 및 여건	○ 대구 지방자치단체 현황 - 대구지역 장애인재활작업장 총 34개소(달성군 5개소)	
수의 재계약 사유	○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3 ○ 수의협약(또는 재계약) 사유 - 수탁기관의 재계약 의사 표명(위탁신청서 제출)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여부 검토 결과 적정 ○ 공개 모집하는 경우 예상 문제점 -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연속성 결여 - 우리군 출자·출연 기관 이외의 자가 운영 시 예산 등 추가 지출 비용 발생 우려	
대상기관 검토내용	위탁사무명	달성군다사장애인지원사업장 관리·운영
	예산 및 기간	달성군다사장애인지원사업장..... 320백만원/연
	대상기관명(대표자)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강성환)
	주요사업	-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사업 - 복지 프로그램 개발 사업 - 복지시설 간 협력 지원사업 - 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 설립일자 : 2008.10.15. - 2008. 10.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허가 (보건복지부) - 2008. 02. 달성군청소년센터 수탁 - 2009. 08. 달성군노인복지관 수탁 - 2009. 12.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대구광역시) - 2010. 03.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기획재정부) - 2011. 03.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수탁 - 2013. 01.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수탁 - 2013. 10. 달성군시니어클럽 수탁 - 2014. 07. 달성군건강가다그통합센터시범운영기과 위탁

대 상 기 관 검 토 내 용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 2014. 12. 다사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 2016. 03.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 2016. 03. 달성시니어클럽 대구광역시 지정 위탁
	인력현황	- 총인원 : 662명(정규직 301명, 비정규직 361명) - 법원 상근인력 10명(이사장 1, 상임이사 1, 부장 1, 선임복지사 3, 사회복지사 1, 선임사무원 1, 공동모금회사업 1, 서무 1) - 사회복지사 자격증 6명, 보육교사1급 1명, 전산회계2급 1명
	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	- 목적 사업용 기본재산(토지·건물) : 해당 없음 - 수익용 기본재산 : 토지·건물 : 해당 없음 - 이자 수입 : 55,131,971원 - 기타 재산 : 해당 없음 - 동산(현금 등) : 21억원(목적사업용 기본자산) - 부채 : 해당 없음 - 재정부담이행실적 : 해당 없음
	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	- 시설물 : 연면적 485.7 (지상1층 241.7㎡, 2층 244㎡) - 시설 : 사무용가구, PC 4대, 차량(포터) 2대 등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 전문성 확보(2020~2024) : 법인 종사자 회계실무 교육 등 10회),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37회)과 보수교육·연수 19회 - 지역유관기관 및 관련 협회 활동 26회 등 - 사업추진 실적(별첨3)
	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재계약시 작성)	· 성과평가 결과(70점 미만 재계약 불가) - 성과평가 결과(92.5점 재계약 타당) · 지도·감독 및 감사 등 결과 지적 및 개선 사항 등 - 2019년 종사자 채용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예산과 결산의 보고 순서 미준수 등 2건 ▶ 이행 완결 - 2020 지적 사항 없음 - 2021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 이행 완결 . - 2022 추경예산 편성 절차 미흡 ▶ 이행 완결 - 2023 종사자 근로계약서 관리 소홀 및 예산 편성 및 결산 절차 미준수 ▶ 이행 완결

별첨3 사업 추진 실적

○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실적 총괄

연 도	사업분류	실 적		비 고
		연인원	결산(천원)	
2019년 6월 (7월~12월)	보호고용사업	1,242	25,899	
	작업장운영사업	440	2,606	
	직업적응훈련사업	3,956	2,897	
	사회생활적응훈련사업	1,340	6,719	
	교육훈련사업	35	1,031	
	조사연구홍보사업	57	2,600	
2020년	보호고용사업	1,171	56,736	
	작업장운영사업	2,060	1,082	
	직업적응훈련사업	410	1,183	
	사회생활적응훈련사업	2,311	982	
	교육훈련사업	32	70	
	조사연구홍보사업	5	600	
2021년	보호고용사업	4,948	72,367	
	작업장운영사업	1,661	1,254	
	직업적응훈련사업	280	891	
	사회생활적응훈련사업	5,390	3,485	
	교육훈련사업	-	728	
	조사연구홍보사업	26	2,557	
2022년	보호고용사업	6,088	90,784	
	작업장운영사업	4,951	4,325	
	직업적응훈련사업	2,100	1,212	
	사회생활적응훈련사업	5,026	3,956	
	교육훈련사업	42	706	
	조사연구홍보사업	58	920	
2023년	보호고용사업	6,233	110,113	
	작업장운영사업	6,070	1,477	
	직업적응훈련사업	6,485	2,300	
	사회생활적응훈련사업	11,847	13,343	
	교육훈련사업	21	1,674	
	조사연구홍보사업	54	1,659	
2024년 6월 (1월~6월)	보호고용사업	2,520	60,720	
	작업장운영사업	25	307	
	직업적응훈련사업	2,780	548	
	사회생활적응훈련사업	926	4,060	
	교육훈련사업	27	1,318	
	조사연구홍보사업	20	-	

※ 수의협약(또는 재계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1. 수탁기관명 및 대표자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강성환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6층(☎ 053-617-9200)

3. 설립목적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2008.10.15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허가(보건복지부)
2008.10.28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등기 및 달성군 청소년 센터 수탁
2009	공립죽곡휴먼시아·매곡어린이집·논공축구장·달성군노인복지관 수탁 및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대구광역시)
2010	천사운동 후원모금, 서재휴먼시아·하빈어린이집 수탁,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2011	공립 옥포·구지어린이집 수탁
2012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수탁
2013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및 달성시니어클럽 수탁
2014	달성군건강가다다통합센터시범운영기관 및 다사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2015	강림·포산·현풍천년나무어린이집 위탁
2016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반도유보라·현풍행복어린이집 위탁
2017	달성군 화원·다사 장난감도서관 위탁, 호반베르디움·우미린더포레스트· 죽곡한신희·에코동화어린이집 위탁
2018	옥포·구지·서재 장난감도서관 위탁,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위탁, 제일풍경채· 호반아이숲·일동미라주·구지반도유보라·삼정그린아이·꿈터 어린이집 위탁
2019	화진이진캐빌·풍경채프라임·옥포이진캐스빌·대성베르힐·중흥꿈자람 어린이집 위탁
2020	달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 논공읍 장난감도서관 위탁, 르상트레빌·국가산단이다음·반도아이사랑·쥬파크·옥포서한이다음· 죽곡협성휴포레 어린이집 위탁
2021	유보라·영무예다음·디에트르·모아미래도·서재태왕아너스 어린이집 위탁
2022	힐스테이트다사·꿈의순어린이집 위탁
2023	달성군남부노인복지관, 다함께돌봄센터, 다사랑어린이집 위탁

5. 주요사업

-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
- 복지시설 간 협력 지원사업
-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사업
- 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

(청소년센터, 노인복지관, 공립어린이집,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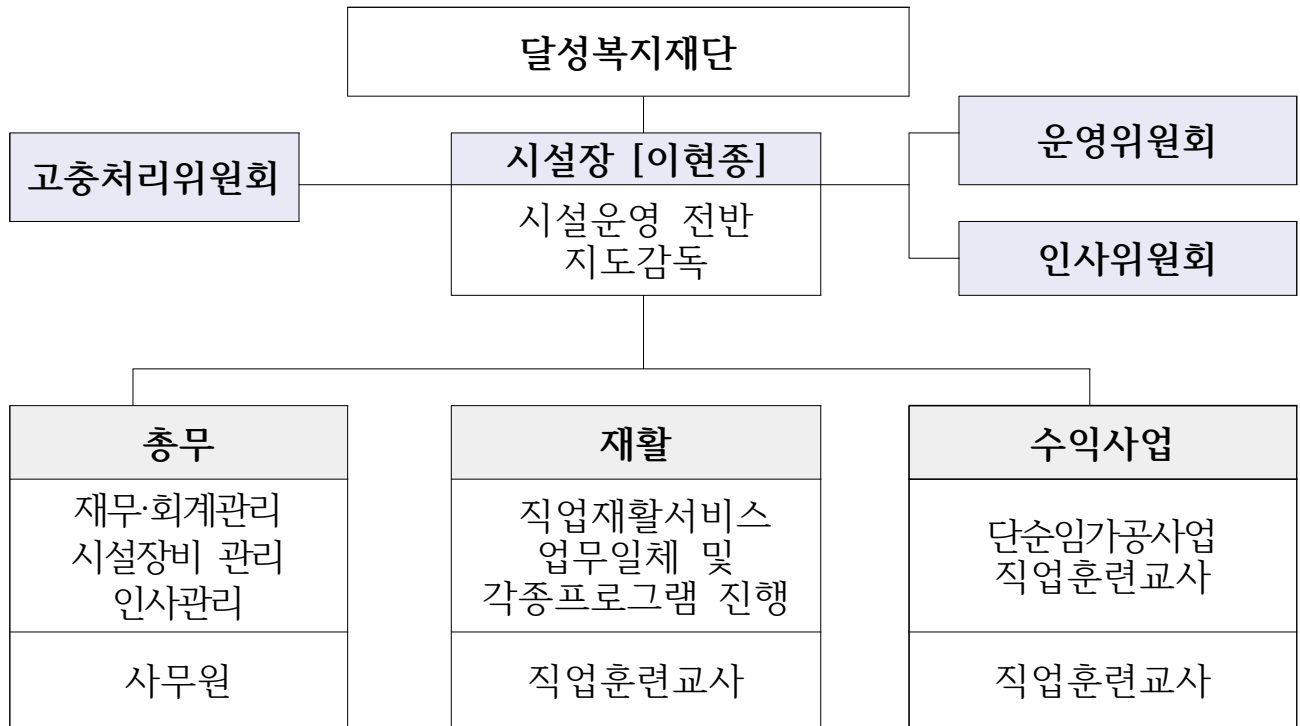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이사장	강성환	前 달성군 하빈, 다사 읍,면장 前 달성군 세무과 과장 前 달성군 문화체육과 과장 前 달성군 환경과 과장 前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現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상임이사	김외식	달성복지재단상임이사
이 사	구명숙	前 달성노인복지센터 대표
이 사	윤영현	現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
이 사	이장희	前 이성철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
이 사	이학도	現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이 사	임규태	現 다사농협 사외이사
이 사	전옥수	現 엠허브의원 총무 이사
이 사	정우선	前 달성군장애인복지관 관장
이 사	차한용	前 달성군 공무원(현풍면장, 환경과장)

7. 직원현황: 총 4명(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시설장	이현종	사회복지사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1급	업무전반	2023.01.01.~현재	정규직
직업훈련교사	최진영	사회복지사 2급	직업훈련교사	2015.02.01.~현재	정규직
직업훈련교사	김경숙	사회복지사 1급	직업훈련교사	2023.04.01.~현재	정규직
서무·회계	이수정	사회복지사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2급	서무·회계	2019.06.01.~현재	정규직

8. 조직도(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9. 재무현황

가. 재 산 : 총2,100,000천원(현재가치로 환산)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기본재산	예금	달성군 출연금	2,100,000
수익용재산		“해당 없음”	
기타재산			

※ ‘구분’ : 기본재산, 수익용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

‘유형’ : 동산(토지, 건물), 부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으로 구분

나. 부 채: 총 천원

내 용	금 액(천원)
“해당 없음”	

다. 수 입: 총 천원

내 용	연 수입액(천원)
“해당 없음”	

10. 재협약 현황 및 향후 계획(신규 수의협약 시 기재 생략)

재협약 현황	○ 재협약 회수: 3회, 총 수탁기간: 10년 - 최초위탁 : 2014.12.19.~2016.11.30.(2년), 재단법인 달성복지 재단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회 심의 - 2차 재위탁 : 2016.12.01.~2019.11.30.(3년) 재단법인 달성복지 재단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계약(갱신) - 3차 재위탁 : 2019.12.01.~2024.11.30.(5년) 재단법인 달성복지 재단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계약(갱신)
재정부 담 이행 실적	○ 해당 없음(비영리기관에 따른 수익금 없음)
사업추진 실적	○ 사업 우수성과 - 위탁기간 동안(2019.12.1.~2024.11.30.)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이 경제적 복지를 지원하였고,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직업능력 향상됨 ○ 수상실적(2020~2024) - 달성복지재단 경영평가 A등급 - 장관급 이상 13개 수상
세입· 세출 내역서	○ 2019~2023년도 연도별 예산 내역(별첨 4)

성 과 평 가 결 과	○ 평가일시: 2024. 8. 9. ~ 8. 13.(3일간, 서면) ○ 평가기관: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평가내용: 달성군다사재활작업장 운영 성과평가 경과 재계약 여부 심의 ○ 평가점수: 92.5점(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총 평: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직업재활에 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반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 및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의 행정재산임을 고려하여, 민간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을 적극 활용할 경우 행정비용의 절감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운영평가 심의의결 자료(성과평가결과서) 첨부(별첨 5)
감 사 실 시 결 과	○ 일시 및 지적사항 - 2019.12.05. 종사자 채용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및 예산 결산 보고 순서 미준수 ► 이행 완료 - 2020.12.09. 지적사항 없음 - 2021.12.01.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 이행 완료 - 2022.12.05. 추경세산 편성절차 미흡 ► 이행 완료 - 2023.12.01. 종사자 근로계약 관리소홀, 예산편성 및 결산절차 미준수 ► 이행 완료
재 정 투 자 계 획	○ 해당 없음 ※ 법인전입금 등 수탁자가 재정부담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향 추 진 계 획	○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지속적 운영 -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정 운영을 통한 복지 증진

별첨 4

예산내역(2019~2023)

○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실적 총괄

(단위: 천원)

연도	세 입							세 출					
	계	사업 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계	사무비	재산 조성비	사업비	잡지출	예비비 및 기타
2019	361,503	51,446	276,500	2,400	6,226	21,344	3,587	334,686	228,635	19,912	75,631	458	10,050
2020	393,118	79,896	283,190	300	-	26,816	2,916	323,433	246,747	10,461	60,653	22	5,550
2021	472,957	99,161	300,400	-	-	69,684	3,712	384,541	263,338	16,041	81,282	43	23,837
2022	522,331	121,748	311,480	30	-	88,416	657	401,724	281,162	7,283	101,963	5	11,311
2023	559,396	117,886	320,000	800	-	120,607	103	436,431	280,303	13,842	130,648	-	11,638

심 의 의 결 서

안 전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위탁운영(재계약) 선정
의 결 주 문	재단법인달성복지재단의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위탁운영 재계약 (적격, 부적격) 한 것으로 의결함. * 심의결과 참석위원 6명, 합계 370 점, 평균 9.5 점
2024년 8월 일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 원 장 배 춘 식 (서명) 부위원장 공 진 환 (서명) 위 원 김 보 경 (서명) 위 원 우 승 윤 (서명) 위 원 장 훈 석 (서명) 위 원 이 무 회 (서명)	

심 사 집 계 표

☐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위탁운영(재계약)선정

☐ 심사총점 및 평균

구분	심사결과							
	총 점	평균						
점수	370	92.5	92	94	92	89	95	92

※ 위원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 점수 제외 합산 평균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4. 8. .

종합채점 검토자 : 장애인복지담당 김 성 수 (서명)

종합채점 확인자 : 사회복지과장 代 배 정 해 (서명)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심 사 표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점 수			평가 점수
			우수 (상)	보통 (중)	미흡 (하)	
계	“점수” 란에 산정점수 기재	100				
1. 수탁자의 적격성	소 계	30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8	8~6	5~3	2~1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8	8~6	5~3	2~1	
	- 법인대표 및 이사회적 적합성	7	7~6	5~3	2~1	
	- 해당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7	7~6	5~3	2~1	
2. 시설운영 의 전문성 및 책임성	소 계	50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7	7	6~4	3~1	
	-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	10	10~9	8~6	5~1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7	7~6	5~3	2~1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7	7~6	5~3	2~1	
	- 세입·세출규모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타당성	7	7~6	5~3	2~1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7	7~6	5~3	2~1	
	- 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5	5	-	1	
3. 지역사회 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소 계	20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6	6~5	4~3	2~1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7	7~6	5~3	2~1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7	7~6	5~3	2~1	

수탁기관 선정 세부심사기준 및 항목배점

심사 기준	심사 항목	심 사 척 도	심사자료	배 점
I. 법인의 적격성	1.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적합성	상) 법인의 형태 및 법인 산하시설이 정관에 적합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 수탁 신청배경 및 목적이 매우 적합한 경우 (8~6) 중) 법인의 형태 및 법인 산하시설이 정관에 적합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수탁 신청배경 및 목적이 비교적 적합한 경우 (5~3) 하) 법인의 형태 및 법인 산하시설이 정관에 적합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 수탁 신청배경 및 목적이 미흡한 경우 (2~1)	• 정관 및 주된사업 • 설립허가증	8
	2. 법인의 보유재산	상) 법인의 사업수행에 따른 기본재산이 10억 이상이고 부채율 감안하여 재정이 매우 우수한 경우 (8 ~ 6) 중) 법인의 사업수행에 따른 기본재산이 5 ~ 10억 미만이고 부채율 감안하여 재정이 보통인 경우 (5 ~ 3) 하) 법인의 사업수행에 따른 기본재산이 5억 미만이고 부채율 감안하여 재정이 미흡한 경우 (2 ~ 1) ※ 예금액의 6개월간의 입출금 확인, 수탁을 받기 위해 수탁 평가 즈음하여 다액의 동산을 입금 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 확인 ※ 부채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부채내용 고려할 것: 시설확장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부채상환계획 등이 설정된 경우 심의위원 판단에 따름	• 부동산은 감정평가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 예금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법인재정 상태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8
	3. 법인조직 및 법인대표· 이사회 적합성	상) 법인대표와 법인직원의 전문성과 이사회 구성이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적합하고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7~6) 중) 법인대표와 법인직원의 전문성과 이사회 구성이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적합하고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다 (5~3) 하) 법인대표와 법인직원의 전문성과 이사회 구성이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미흡하고 활동이 저조하다 (2~1) ※ 법인과 관련된 친인척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정도 (10%이하는 상) ※ 법인대표를 포함하여 법인직원 중 사회복지전문가 (자격증소지자 등) 참여 정도 (70%이상은 상) ※ 이사의 주요 경력 중 사회복지전문가 (교수, 자격증소지자 등) 참여 정도 (20%이상은 상)	• 대표자 및 임원명단 주요경력 조직도 등 • 이사회 구성 적절성 등	7

심사 기준	심사 항목	심 사 척 도	심사자료	배점
I. 법인의 적격성	4. 법인의 사회복지 사업 운영 실적	상) 최근 5년간 사회복지사업 계획 대비 실적과 법인 회계집행 등이 매우 우수한 경우 (7~6) 중) 최근 5년간 사회복지사업 계획 대비 실적과 법인 회계집행 등이 보통인 경우 (5~3) 하) 최근 5년간 사회복지사업 계획 대비 실적과 법인 회계집행 등이 미흡한 경우 (2~1) ※ 신청법인에서 지적사항을 상이하게 또는 누락시키는 경우 0점처리 (정확하게 기입한 법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 ※ 법인중 실적 및 지도감독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와 지적사항을 시정, 훈계, 경징계 등 고려하여 심사위원 판단	• 법인의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 감사보고서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본	7
	5.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상)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을 갖추고 시설운영의 우수성 (수상 5회 이상)과 공모사업 실적이 5회 이상을 충족할 경우 (7) 중)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을 갖추고 시설운영의 우수성 (수상 3회 이상)과 공모사업 실적이 3회 이상 ~ 5회 미만을 충족할 경우 (6~4) 하)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을 갖추고 시설운영의 우수성 (수상 3회 미만)이거나 공모사업 실적이 3회 미만일 경우 (3~1) ※ 사회복지사업 운영의 우수성 및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 참여실적 판단	• 법인직영·수탁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운영 분야 • 수상, 우수인증서 • 공모사업 실적	7
II.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 시설장의 전문성	상)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자격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5년이상인 경우 (10~9) 중)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자격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0 ~ 15년미만인 경우 (8~6) 하)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자격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0년미만인 경우 (5~1)	• 이력서 • 자격증사본 • 이용시설 경력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상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한함)	10

심사 기준	심사 항목	심 사 척 도	심사자료	배점
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7.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상) 운영 및 사업계획서, 조직 종사자 전문성 및 비전·목표 타당성 우수한 경우 (7~6) 중) 운영 및 사업계획서, 조직 종사자 전문성 및 비전·목표 타당성 보통인 경우 (5~3) 하) 운영 및 사업계획서, 조직 종사자 전문성 및 비전·목표 타당성 미흡한 경우 (2~1) ※ 운영 및 사업계획서 및 중장기 계획안의 적정여부 ※ 조직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증(80%이상 우수, 50%이상 보통, 50%미만 미흡) 및 고용승계 여부 등 ※ 조직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설정 우수, 보통, 미흡	• 운영 및 사업계획서 • 종사자 자격증 내역	7
	8.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상)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 우수한 경우 (7~6) 중)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 보통한 경우 (5~3) 하)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 미흡한 경우 (2~1)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평가(정성평가)	• 시설운영 전문성 강화 방안	7
	9. 세입·세출 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	상) 예산편성 및 수입재원 확보수준이 우수한 경우 (7~6) 중) 예산편성 및 수입재원 확보수준이 보통인 경우 (5~3) 하) 예산편성 및 수입재원 확보수준이 미흡한 경우 (2~1) ※ 예산편성 중 세입과 수입재원 확보 적절성 판단(정성평가)	• 법인 예산서, 결산서 • 수익사업 현황 • 재정운영 및 투자 계획서	7
	10.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상)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수준이 우수한 경우 (7~6) 중)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수준이 보통인 경우 (5~3) 하)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수준이 미흡한 경우 (2~1) ※ 자체감사, 외부감사, 회계감사 여부 등	• 자 체 감 사 , 외부 회계 감사자료 •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등 사용결과 보고 자료	7

심사 기준	심사 항목	심 사 척 도	심사자료	배점
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11.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 사용	상)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5) 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미사용 (1)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통한 예산편성, 사용 등 책임성 확보 여부	• 사용 프로 그램	5
Ⅲ. 지역 사회 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12.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상)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이 우수하다. (6~5) 중)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이 보통이다. (4~3) 하)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이 미흡하다. (2~1) ※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사업계획서	5
	13. 유관기관과 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상)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이 적절하고 연계·연합 활동이 우수하다. (7~6) 중)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이 비교적 적절 하고 연계·연합 활동이 보통이다. (5~3) 하)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연합 활동이 미흡하다. (2~1) ※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사업계획서	7
	14. 지역사회 자원 동원방안	상) 후원자·후원금·자원봉사자 개발관리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계획이 우수하다. (5) 중) 후원자·후원금·자원봉사자 개발관리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계획이 보통이다. (3) 하) 후원자·후원금·자원봉사자 개발관리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계획이 미흡하다. (1) ※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사업계획서	6